

## 제 5회 목포시의회 제 1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 4285(1952)년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7명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文宅鎬,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金吉煥,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2) 불참의원: 4명

金八用, 金京炫, 朴贊圭, 金采庸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朴在祐 시장, 徐良鳳 부시장, 黃道益 총무과장, 吳在鵬 건설과장,  
尹柱善 사회과장, 金容俊 산업과장, 재무과장, 金滢善 호적과장

4. 의사일정:

1) 개회식

2) 보고사항

3) 전기 회의록 낭독

4) 요식업자로부터의 진정서 보고

5) 시정감사 보고

5. 개회선언

劉正斗의장

(오전 10시 30분)

6. 개 회 식

1) 개 식 사: 劉正斗의장

2) 국민의례

3) 식 사: 劉正斗의장

4) 폐 식

7. 보고사항:

1) 제4회 임시회의 회의록 낭독: 朴燦大 간사

2) 요식업자로부터 진정서보고: 朴燦大 간사

3) 시정감사 보고

◇ 鄭應杓의원

- 감사보고에 들어가기 전 시 각 과장을 출석케 하자 긴급동의(재청가결)

◇ 陳福春의원

- 시에 자동차 구입이 필요하다 하니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듣자.

◇ 朴在祐 시장

- 6.25전에는 7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한 대도 없다.

최소한 승용차 1대와 트럭 2대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에 해결하겠다.

◇ 李在洪의원

- 7월 6일부 신문에 동회의 잡부금을 일소시키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

◇ 朴在祐 시장

- 지방 자치단체의장의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金永完의원

- 멸공 뺏지를 한청에서 각 동회에 판매의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잡부금으로 취급하는가?

◇ 朴在祐 시장

- 잡부금이 아니다.

◇ 鄭應杓의원

- 현재 50여종의 잡부금이 있는데 앞으로 잡부금 일체는 본 회의를 거쳐서 징수기로 하자 동의(재청가결)

◇ 李小圭의원

- 시장의 말에 상부지령을 운운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많이 있으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잡부금 징수에 있어서는 시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해야 할 것이며, 시장이 거부하면 의회에 회부해 주기 바란다.

◇ 陳福春의원

- 목포경찰서의 경비정이 있는데 경비하는데 너무 방관하고 있다.

요는 수리 문제인데 경비난으로 도저히 목포에서는 이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경찰서장을 출석케 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동의

◇ 鄭應杓의원

- 경찰서 경비선이라 해서 잔교에 정박시키고 있는데 그 잔교는 제일 객화물선이 많이 왕래하는 영해동파출소 옆 잔교로서 목포선박업자들에게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용 못하는 것이라면 떨어진 곳에 정박시켜 놓으면 좋겠다.

◇ 朴在祐 시장

- 일체 잡부금은 의결을 거쳐서 하여야 하는데 국가 행정사무는 일일이 중앙에서 통첩이 있다.

즉 호법회비 같이 전도적으로 징수케 되는 이러한 것은 의결이 필요치 않다. 다만 목포시 자체로서 해결된 문제라든가 지방에만 국한되는 잡부금은 상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결을 고치도록 수정 동의해주면 좋겠다.

다음은 경비선 문제인데 시속 15마일, 320톤의 금강환(경비선)은 제주도까지의 원양어업권 확보와 해상 조난구조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기계는 우수하나 내부수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배를 움직이려면 2일이 걸리고 300만圓의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특히, 林基奉의원께서 중앙에 절충도 했고, 치안국에서도 2차나 검사키 위하여 내목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요구한 2억 6천만圓 중 특별회계로 내무부에서 2억 3백만圓을 승인 보조키로 되었으며, 이제는 대통령의 결재만 있으면 곧 쓸 수 있다.

◇ 陳福春의원

- 수리를 해가지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며, 이 경비를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차라리 군함으로 이용하든지 팔아서 소경비선을 이용하면 막대한 경비가 들지 않을 것이다.

◇ 朴在祐 시장

- 해군하고 누차 상의해 보았으나 군함으로서는 개조하지 못하고 다만 후생용선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팔게 되면 약 30억圓 정도인데 매입처가 없다.

특히 일본배의 침입이 빈번한 요사이 아국의 어업권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우리 금강환을 복구해야 할 것이다.

◇ 鄭應杓의원

- 선박이 많이 왕래하는 잔교에 경비선이 정박하고 있어 많은 지장이 있다.

시장의 말은 배를 움직이기에 300만圓이란 막대한 경비가 든다 하지만 다른 배가 끌어서 옮길 수도 있는 문제이니 안전 장소에 이전시킬 것을 본 회의 결의로써 서에 통고할 것을 동의(재청)

◇ 鄭應杓의원

- 시장의 말과 같이 대통령결재만 있으면 쓰게 될 2억 300만圓의 보조를 하루속히 받아 수리하도록 본 회의 결의로써 시장 연서로 대통령께 건의문을 보내자 동의(재청가결)

◇ 劉正斗의장

- 각 과장이 출석했으니 지금부터 감사 보고에 들어가겠음

특히 국가위임 사무는 제외하고 지방 고유사무만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제 1반 李福柱의원으로부터 별지 감사 보고서와 여히 보고하였음

※ 제 2반 李小圭의원: 군경원호회 사업의 추진 및 사무처리에 있어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히 허다한 모순된 점을 지적함과 동시 이상적인 원호사업을 실시하도록 본회의 결의로써 도의회와 국회에 건의해서 각급 지방자치 단체에 일임토록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문 작성과 법규를 연구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과 예규에 준해서 인사 행정도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상이군경으로서 인사 배치를 시행토록 하자는 동의

◇ 劉正斗의장

- 군경원호법 제 28조 및 제 30조 등 시행령 제 1장 제3조, 제 4조동 정관 제 1장 제 3조 동 직제 제 3조의 법적 해설이 있는 후 앞으로 법에 의해서 원호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망하여, 李小圭의원외의 동의안은 재고려해 주기 바람

◇ 李小圭의원

- 사무처리에 있어서도 모순된 점이 많다.

회비 중 300만圓을 부시장이 빌린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조사한 부시장이 빌린 것이 아니라 호적과, 사회과에서 빌려갔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아무런 증빙도 없다. 이 점도 분회장인 시장께서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

※ 金南鎭의원으로부터 계속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히 보고하였음

◇ 徐良鳳부시장

- 군경원호회비 중 300만圓을 사용한 데 대하여는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 동안 제 2국민병 신체검사시 막대한 경비가 필요했다.

미처 기채는 못하고 해서 일시경비를 충당했으나 호적과에서 직후 반환하고 다시 사회과에서 후생주택경비 관계로 200만圓을 차용한 것인데 이런점을 특히 양찰해 주기 바란다.

◇ 劉正斗의장

- 휴회선언

(오후 1시 30분)

◇ 李小圭 부의장

- 속개선언(오후 3시) 의장 부대로 부의장 사회를 대신함

◇ 鄭應杓의원

- 사회과장도 출석치 않았으니 오후 회의는 산회하기로 동의(재청가결)

◇ 李小圭 부의장

- 회의록 서명에 鄭應杓, 陳福春의원을 지명

◇ 李小圭 부의장

- 산회선언

(오후 3시 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7월 7일

議長: 劉正斗

議員: 鄭應杓

”: 陳福春

作成者 書記: 千世鳳

## 제 5회 목포시의회 제 2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7월 10일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6명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文宅鎬,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金吉煥,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2) 불참의원: 5명

金三星, 金京炫, 金八用, 朴贊圭, 金采庸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朴在祐 시장, 徐良鳳 부시장, 吳在鵬 건설과장, 金容俊 산업과장,  
尹柱善 사회과장, 金宗云 재무과장, 金滢善 호적과장, 金商淑 서무과장

4. 의사일정표:

5. 보고사항:

- 1) 전회 회의록 낭독
- 2) 시정 감사보고

6. 부의안건:

- 1) 목포시 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의 건
- 2) 목포시 교육위원회위원 비용변상조례 제정의 건
- 3) 단기 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 金永完의원

- 지난 5월 25일 미창 사고미 사건이 아직도 시민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차제에 또 다시 거 7월 8일자 목포일보 및 광주신보에 보도되어 말썽거리가 되어 있다.

특히 1개월 전의 대통령령 제 58호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절미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시내에 아사자까지 나오고 있다는 신문이 보도되고 있는 이때 금반 2천트에 달하는 사고미에는 상당한 물의가 비등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 당국이나 금련에서 조사중에 있으나 시의회에서도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니 즉시 미창 지점장을 출석케하여 들여보자 긴급동의(재청가결)

◇ 鄭應杓의원

- 부영잔교 부근에 침몰되고 있는 준설선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박이 충돌되어 침몰한 사실이 누누이 있다. 이러한 사고 방지상 조속히 인양하도록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목포지구 항만공무소에 가서 그 진상을 조사함과 동시에 시의회와 협조해서 상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해결하자 동의(재청가결)

7. 보고사항:

1) 전차 회의록 낭독: 朴燦大 간사

◇ 李在洪의원

- 7월 7일 감사보고 끝에 시 모 계장이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말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진상을 알기 위하여 2반 담당자 金南鎭의원으로부터 실정을 들여보자

◇ 金南鎭의원으로부터 진상 보고(보고요지)

7월 7일 의회 산회 후 노변에서 시 서무계장(감사 당시는 호적계장) 金商淑을 만났는데 계장말이

問: 金의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사보고시 지명까지 해서 때렸는가?

答: 노변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 가자

問: 사실이 불확정 될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당할 것인가?

答: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고소해라



◇ 李在洪의원

- 사무계장 金商淑 문제는 보류하고 감사 보고로 들어가자

◇ 劉正斗 의장

- 이 문제는 보류하고 전일 계속해서 제 2반부터 감사보고 하겠음.

◇ 金吉煥의원

- 사무계장 金商淑을 출두시켜 의사를 들어보자.

◇ 劉正斗 의장

- 오후 의회에 밀고 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음.

◇ 李小圭의원 제 2반

- 만호동회 사무감사를 별지 보고서와 여히 보고가 있는 다음 현 만호동장은 사무적 면에서 치밀하고 침착하여 상부의 지시에 순응하여 동정이 활발히 운행되고 있으나 전 동회장 김성곤과의 사무인계 미진으로 동정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부정처분한 4천만圓의 공금을 개인이 사용한 것을 아직까지 청산치 않고 있으니 7월 15일까지 시일여유를 주어 청산토록 할 것과 만약 위반하면 본회의 결의로서 수사당국에 고발해서 처벌토록 하자 동의(재청가결)

※ 이어 金南鎭의원으로부터 제 2반 감사보고를 별지 보고서와 여히 보고완 료 하였음.

◇ 李小圭의원

- 동명동회의 동장은 사재를 내면서까지 동운영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동 수석서기가 졸렬한 사무처리와 근무태만으로 제반 서류가 불비되어 있으며, 겸하여 셋이나 축첩을 두고 식량배급까지 다 주고 있으니 시급히 수석 서기를 경질하도록 지시해 주기 바란다.

◇ 金南鎭의원

- 대다수의 동이 동운영을 못하는 부진상태에 빠져있다. 이는 시에서 주는 전도금이라든가 직원 월급을 매월 주지 않는 것이 원인이며, 시정사무를 강력히 추진 못한 것에 있으니 이런 점을 유념해서 시정하기 바란다.

◇ 劉正斗의장

- 미창 지점장 河元泰씨께서 출석하였으니 미창 사고미에 대한 진상을 들어 보자.

◇ 河元泰 미창지점장

- 사고미에 대한 진상을 설명(설명요지)

금반 사고미건이 신문에 여론화된 것에 미창 책임자로서 죄송하다.

그러나 미창은 아무런 조작할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다. 다만 보관할 따름이고 이 문제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 金永完의원

- 미창은 책임이 없다 하는데 정당한 정미로 포장해서 미창에 보관했을 것이며, 건조관계로 경비까지 지출되고 있으므로 사고미 관계는 미창에도 보관상 책임이 있다.

◇ 河元泰 미창지점장

- 작업장 침수를 시켰다든가 창고가 비에 샌다면 책임질 수 있으나 수분이 많은 쌀을 5분류만 해가지고 5월에 배급 않고 6월에서 배급하여 자연 감소된 것은 미창에서 책임질 수 없다.

◇ 李小圭의원

- 미창은 금련의 지시에 의해서 할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나 정부미를 보관하는 선량한 보관자의 입장에서 상시 감시에 철저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금련과 상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없을까?

◇ 金永完의원

- 일제시대에는 3, 4년 보관해도 부패하지 않았다. 요는 창고 문제인데 시내 비어있는 창고를 이용하면 이런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미창은 보관 책임상 감시 철저와 사전 창고 교섭에 적극 유념해서 사고방지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 河元泰 미참지점장

- 앞으로 감시에 철저할 것과 수시 금련과 연락해서 사고 방지에 노력하겠다.

※ 제 3반 林一男의원으로부터 별지 감사 보고서와 여히 보고 완료

※ 제 4반 李文吉, 金永完의원으로부터 감사 보고

◇ 李文吉의원

- 시립병원 부정사건이란 것은 단기4285(1952)년 12월 31일, 직원연말 위로금으로써 약 70만圓에 달하는 약품을 처분하여 분배한 것이나 이는 동정을 아니할 수 없고, 특히 현 원장은 병원복구에 적극 활약하고 있으며, 약 1억대가 넘는 약품과 기구를 보조받고 있고 특히 의사대우에 특별한 개선이 필요하다.

※ 제 4반 金子洪, 明南喆의원으로부터 별지 보고서와 여히 감사 보고 완료

◇ 劉正斗의장

- 시립병원장으로부터 병원의 실정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발언 요구가 있으니 들어보자.

◇ 洪昶植 원장

- 시립병원의 실정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설명요지)

병원의 화재와 6.25사변으로 모든 기구가 없어졌으며, 많은 파란곡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략 갖추고 있고 현재 C.A.C로부터 약 1억圓 가량의 기구와 약품을 얻게 되었다. 특히 병원의 수리와 의사 대우개선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 劉正斗 의장

- 서무계장 金商淑이 출석하였으니 의원 고소발언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자.

◇ 서무계장 金商淑

- 호적협회비 유용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듣고 노변에서 金南鎭의원을 만나 그

사실을 물어본 바 그만두라는 말에 나를 완전히 도둑놈으로 인증하고 사실 아닌 누명을 쓰고 사회에 매장되지 않느냐는 동기에서 金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 金南鎭의원

- 호적협회가 탄생된 것은 4월 2일인데 법적으로서도 인증되어 있지 않은 계서대 천圓씩을 2월 중순부터 받았으며, 그중 100여만圓의 유용에 회장인 시장결재도 없었고 신시장 취임 이래로 2백4십3만8천7백圓의 유용도 전연 시장의 결재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호적과장에게 문의하였던 바 금전관계는 金商淑(당시 호적계장)에게 보관했다는 말이 있었다.

◇ 劉正斗의장

- 휴회선언 (오후 1시 30분)

◇ 劉正斗의장

- 속개선언 (오후 2시 5분)

◇ 劉正斗의장

- 일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직제 심의하겠음

◇ 李福柱의원

- 금반 13개 동장의 교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 시장과 의장, 국민회장의 참의하에 되어졌다고 하는 바 만일 사실이라면 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고, 또 동장은 민선케 되어 있으니 민선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의를 대표한 의원의 의견도 필요할 것인데 시장의 설명을 요청함

◇ 劉正斗의장

- 인사 문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일이니 그 인사 처리에 대하여는 언급할 수 없으나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결과가 부적당할 때는 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치행정으로부터 민치행정으로 지향하는 차제이니 인사 문제에 있

어서는 강력한 쇄신이 있기를 바란다.

※ 시장 설명은 약함

◇ 李小圭의원

- 인사 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동장 교체 관계에 국민회가 개입되어 있다는 설이 있으니 그를 철저히 규명함을 요함

◇ 李在洪의원

- 본인의 출신동의동장도 교체된데 대하여 특별한 설명 원치않으나 그 동을 대표하고 나온 의원이 있으니 의견을 들어주는 기회를 갖도록 시장에게 요청함.

◇ 劉正斗의장

- 동장 인사 문제는 그만 그치고 일정에 따라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 가겠음.

8. 토의안건:

※ 목포시 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의 건

◇ 朴燦大간사

- 원안 낭독

◇ 李小圭의원

-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이니 2독회, 3독회를 생략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 동의(재청가결)

※ 목포시 교육위원회위원 비용변상조례 제정의 건

◇ 劉正斗의장

- 본건도 원안대로 통과함이 여하한가?

전의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 의원과 행정부간에 예산면을 계속하고 질의 응답 개시  
질의 응답 약 30분간

◇ 陳福春의원

- 교육위원회의 예산편성에는 모순된 점이 비일비재하니 전문가로서 심의 검토케 하여 재편성토록 하자 동의(재청가결)

◇ 劉正斗의장

- 지금부터 비밀회의로 들어가겠음

◇ 朴燦大간사

- 신문기자와 방청인의 퇴장을 요구  
비밀회의 약 50분간

◇ 劉正斗의장

- 韓경찰국장으로부터 무전 통고 온 귀향의원 환영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주지함과 동시 개최일시와 장소는 의원께서 오시면 결정하자.

◇ 李福柱의원

- 요사이 의원의 출석상황을 보건대 무단결석과 빈번한 지참으로 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됨은 13만 시민에게 사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점에 의원 제공의 축성을 바라며, 앞으로는 징계법에 의하여 철저한 엄벌주의로 나가겠다.

◇ 劉正斗의장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金南鎭, 金永完의원을 지명

◇ 劉正斗의장

- 폐회선언

(오후 4시 50분)

◇ 폐 회 식:

1. 개 식 사: 朴燦大간사
2. 국민의례
3. 식 사: 劉正斗의장
4. 폐 식 사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7월 10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永 完

”: 金 南 鎮

作成者 書記: 千 世 鳳